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705호

2021.8.17.(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21-2191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

◆ 공 고

제2021-2192호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공고 3

자치법규**[입법예고]**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-2191호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8월 17일

서울특별시장

1. 개정이유

자치구의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측정단위와 산정기준을 조정하고, 용어를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함(안 제11조)
- 나.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 관련 사항을 조정함.
 - 측정항목의 측정단위를 개선 및 추가함(안 별표 1).
 - 측정단위의 수치산정기준을 보완함(안 별표 2)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: 자치행정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7층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(전화: 02-2133-5814, 팩스: 02-2133-0776, 이메일: juno8318@seoul.go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-2192호

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공고

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17일
서울특별시장

1. 일 시 : 2021.9.1.(수) 15:00~17:00
2. 방 식 : 영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공청회
3. 참여방법 : 온나라 영상회의(<http://vc.on-nara.go.kr>) 접속
- 회의실 제목 :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
4. 발 표 자 : (재)서울연구원 신가희 책임연구원
5. 주요내용 : 조정교부금 학술용역 결과보고 및 제도개선 의견수렴
- 「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」 결과 발표
- 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」 개정사항 설명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 수렴
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(전화: 02-2133-5814, 이메일: juno8318@seoul.go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